

입환실무론

제1장 입환의 개념

제2장 외국환거래 법령의 이해



원광대학교 국제통상학부

유 하상 교수

❖ 제1장 외환의 개념



1. 외환의 개념
2. 외환의 역사
3. 외환의 특징
4. 우리나라의 외환제도



(1) 외환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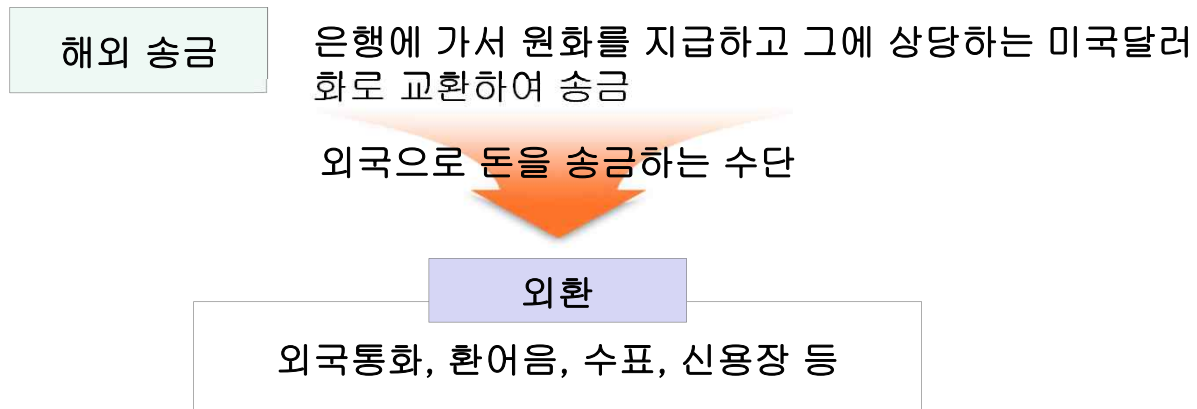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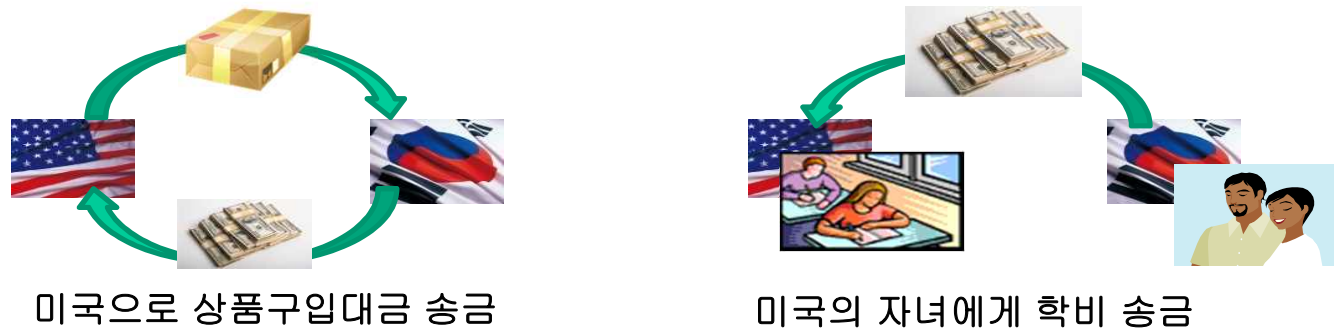
- ① 환(exchange)
 - 직접적인 현금수송에 의하지 않고 지급위탁이나 채권양도 방식, 즉 은행의 중개에 의하여 약속어음, 환어음, 수표 등의 신용수단을 이용하여 격지자 간의 대차결제를 하는 방법을 말함
- ② 내국환(domestic exchange)
 - 국내의 대차관계를 결제하는데 이용되는 환
- ③ 외국환(foreign exchange)
 - 국가 간 결제에 사용되는 환, 즉 대외지급수단으로서의 환

(2) 외국환거래법상의 정의

- ① 외국환이란 대외지급수단, 외환증권 및 외환채권을 말한다.
- ② 대외지급수단이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부지폐(국제통화), 은행권, 주화, 우편환, 직불카드, 신용카드, 환어음, 약속어음 등의 지급수단을 말한다.

사례

- 미국에 있는 회사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고 상품대금을 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나
- 미국인 학교에서 공부하는 자녀에게 학자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해외로 돈을 송금하려면
- 은행에 가서 원화를 지급하고 그에 상당하는 미국달러화로 교환하여 송금하게 된다.
- 이처럼 외국으로 상품대금이나 학비 등을 송금할 때 사용되는 수단을 외환이라고 함
- 외환에는 외국통화 외에도 환어음, 수표, 신용장 등이 있음



1. 외환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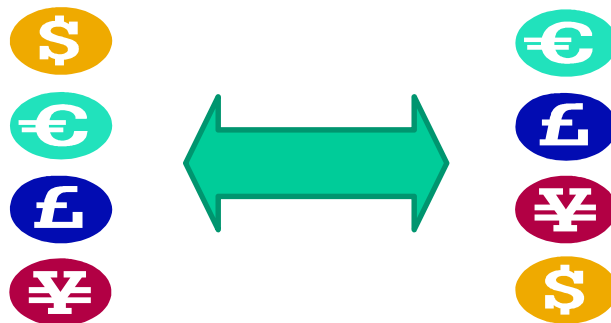
- 예를 들어 엔화 강세가 예상되어 내가 가진 돈을 엔화로 바꾼다면 지, 달러화 약세가 예상되어, 가지고 있는 달러를 모두 원화로 바꾸는 경우도 외환이라고 부른다.
- 세계 여러 나라에는 서로 다른 통화가 유통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는 것을 외환이라고도 부르는 것이다.
- 통화를 교환한다는 것은 상품을 사고 팔 때와 마찬가지로 자국표시통화(예, 원화)로 지급하고 외화표시통화(예, 달러화)를 사는 것을 의미하며. 그 반대로 외화표시통화를 지급하고 자국표시통화를 사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원화를 엔화로 바꿈



달러화를 원화로 바꿈



- 자국표시통화 지급
- 외화표시통화 구입
- 외국표시통화 지급
- 자국표시통화 구입

3. 외환의 특징

(1) 환율의 발생

- 이중통화간의 교환비율문제가 발생: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서로 다른 나라에 떨어져 있고, 다른 화폐단위를 사용.

(2) 이자요소의 개입

- 이자문제 발생: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의 대차결제가 우송기간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자문제가 발생(이자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는 사전에 약정)

(3) 환위험의 개입

-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이 발생: 교환시점에서의 환율에 따라 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음

(4) 환거래은행의 개입

- 외국환은행이 필요: 무역거래의 대금결제는 모두 외국환은행을 통해 이루어짐
- 국내 교환결제와는 달리 해당 국가에 소재한 환거래은행(Correspondent Bank)을 하나이상 경유하면서 결제가 이루어짐

환거래은행(Correspondent bank, corres bank)

- 외국환은행이 외국환 업무나 국제 금융업무를 취급하려면 외국에 있는 은행의 서비스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 예컨대 어떤 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수출지에 있는 수익자에게 신용장을 통지하기 위해서는 수출지에 있는 은행의 수고를 빌려야 하며, 선적 후 대금지급의 경우에도 외국에 있는 은행이 대금지급을 대행하여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외환은행은 외국에 있는 은행과 환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조건, 서명감, test key 등을 교환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대은행을 환거래은행이라고 한다. 이때 대금지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자기명인의 예치금계정을 설치한 은행을 예치환거래은행이라고 하며, 예치환계정을 개설하지 않은 은행을 무예치환은행이라고 함

① 예치환은행(depository correspondent bank)

- 외국인의 환거래은행에 당좌예금계정(current a/c)를 개설하여 자국의 지급이나 수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말함
- 예컨대 신용장을 개설한 후에는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선적서류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예치환거래은행에 있는 외환타점 예치계정(nostra a/c)를 통해 이루어짐

② 무예치환은행(non-depository correspondent bank)

- 당좌계정이 없이 자금수수 이외의 단순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은행을 말함
- 한국외환은행의 예 : 환거래은행(3,100여개), 예치환거래은행(40여개)

4. 우리나라의 외환제도

(1) 외환 거래의 자유화

- ① 우리나라의 외환정책은 경제규모 및 대외개방 확대, 금융 및 외환시장의 양적·질적 발전 등에 따라 규제 위주에서 시장원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
- ② 1990년대 들어 자본자유화와 개방화가 본격적으로 추진,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환율제도를 자유변동환율제도로 변경하면서 환율정책의 목표도 국제수지 흑자 달성보다는 환율의 변동성 완화 등 시장안정에 보다 큰 비중

(2)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 ① 자본자유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커진 반면 통화팽창, 자산가격 급등, 환율 변동성 확대 등 거시경제 운용의 어려움도 가중
- ② 이에 한국은행과 정부는 외자유출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 외환전망상을 구축하여 외자유출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면밀히 파악함과 아울러 외환정보집중기관제도를 도입하여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외환정보를 집중·관리
- ③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액을 꾸준히 확충하여 긴급시 대외지급수요에 철저히 대비. 외환보유액은 민간의 외환부족시 환율안정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신인도 제고에도 도움을 준다.

(3) 국제적 성격

- 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경제 전반의 시스템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거시건전성 제고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범세계적으로 확산
- ②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 국제금융협력 강화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4. 우리나라의 외환제도

(4) 외국환업무추진기관 제도

- ①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해서는 외환거래 자유 보장/ 외환시장을 활성화가 필요. 그러나 자유를 과도하게 허용할 경우 외환시장 및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②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 또한 외국환 수요와 공급의 균형 유지를 위해 통화 및 재정 정책, 환율의 유연성 제고 등과 함께 외국환 거래에 대한 직·간접적인 규제가 필요
- ③ 우리나라는 IMF의 권고를 수용하여 규제·관리 위주의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외환거래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제정
- ④ 「외국환거래법」은 민간부문의 경상거래 및 자본거래를 전면적으로 자유화하고 국가경제 측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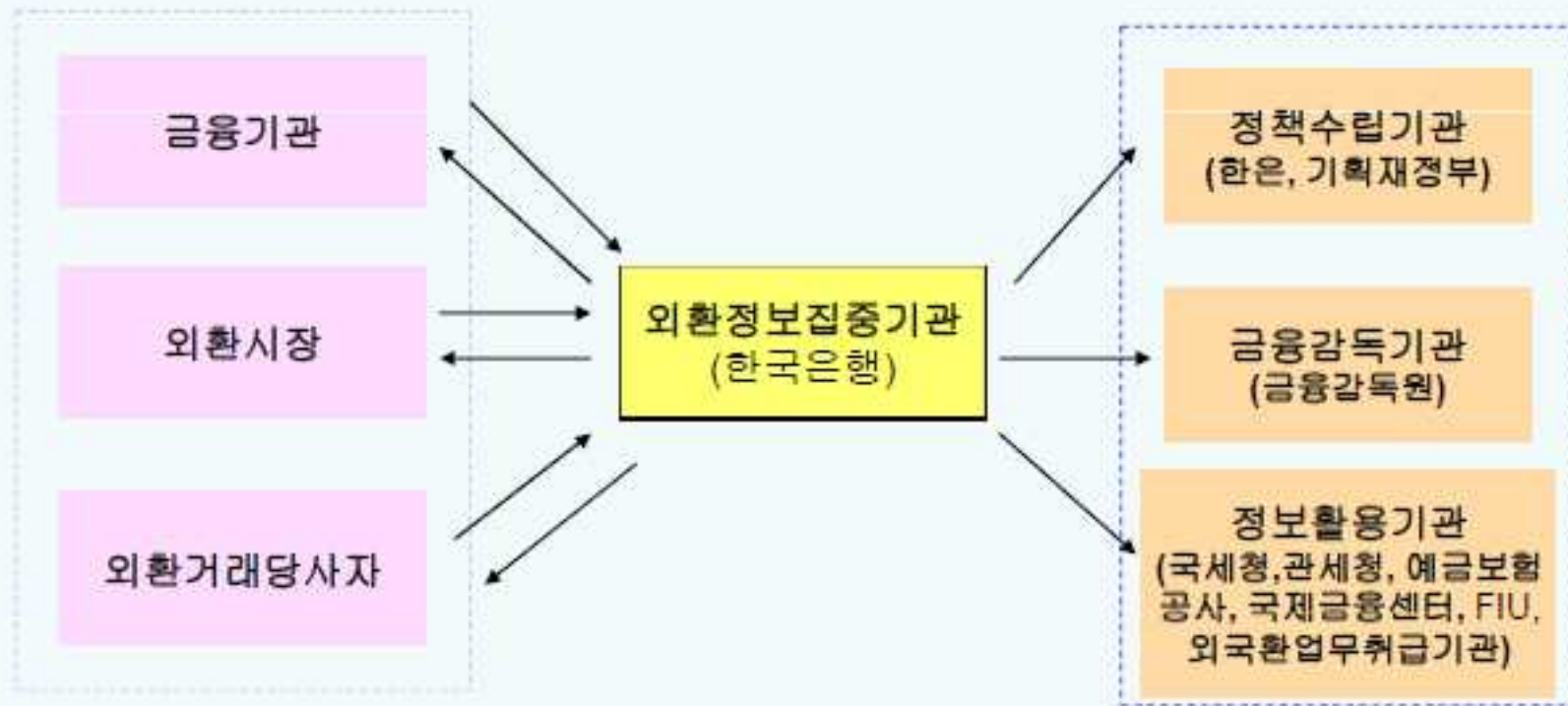
1. 외국환거래법의 개정배경

<우리나라 외환제도 변천추이>

- 1961.12 外國換管理法 제정
- 1997.12 외환위기 발생(IMF구제금융), 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환율변동폭 폐지)
- 1998. 7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 관련 외환거래 자유화
- 1998. 6 제1차 외환자유화 방안(외환거래 자유화의 단계적인 추진방안) 발표
(2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자유화를 추진키로 함)
- 1999. 4 外國換去來法 시행(外國換管理法 폐지)
제1차 제1단계 조치 실시(금융기관 및 기업의 외환거래 자유화,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를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 전환)
- 2001. 1 제1차 제2단계 조치 실시(개인의 외환거래 자유화)
- 2002. 4 제2차 외환자유화 방안(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 발표
(당시까지 남아 있던 규제를 2011년까지 3단계에 걸쳐 자유화)
- 2002. 7 제2차 1단계 조치(외환제도 선진화계획) 실시
- 2006. 1 자본거래 허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
- 2006. 5 제2차 외환자유화 방안 수정안(외환자유화 추진 방안) 발표
(당시까지 남아 있던 규제를 2009년까지 2단계에 걸쳐 자유화)

1. 외국환거래법의 개정배경

<외환전산망>



- 주 : 1) 외환정보 보고기관은 직접연결기관 92개, 간접연결기관 288개
2) 외환정보 이용기관은 외환전산망 자료를 외화자금유출입 동향 및 외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외환수급·외채 등 외환통계 작성, 외환거래 사후관리 등에 활용



❖ 제2장 외국환거래 법령의 이해

1. 외환환거래법의 개정배경
2. 외국환거래법의 목적
3. 주요수단
4. 외국환거래법령의 법체계
5. 외국환거래의 적용대상
6. 기관별 외국환거래신고

1. 외국환거래의 원칙적인 자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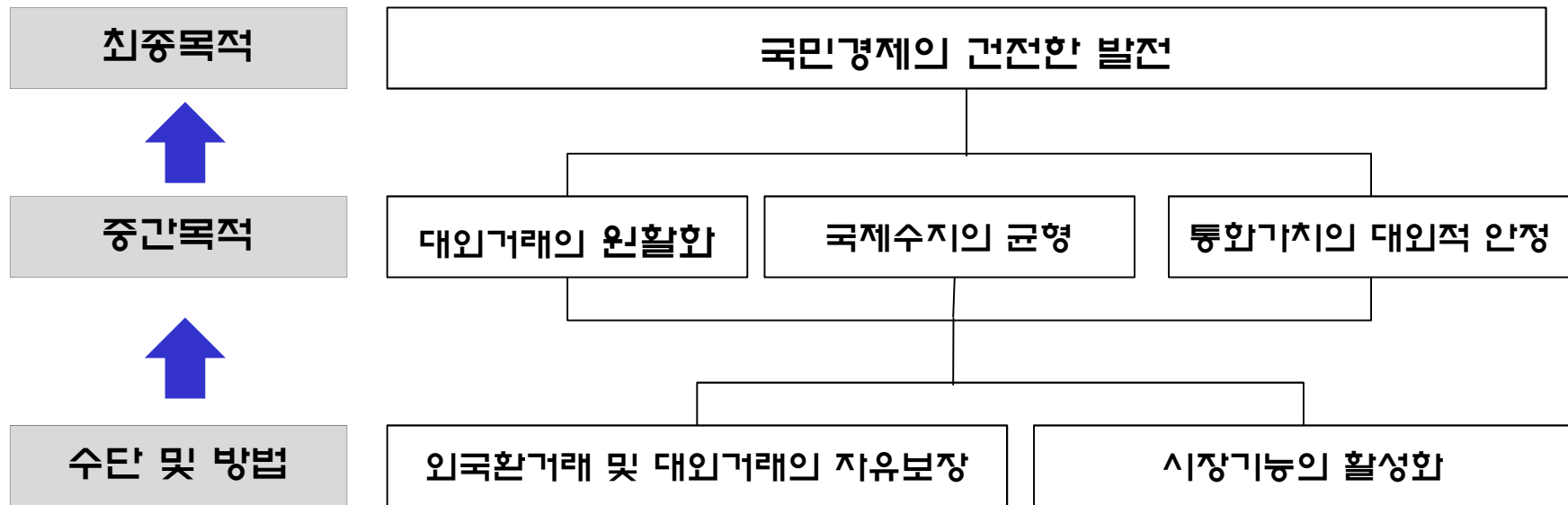
외국환관리법(1961.12월)
원칙적 규제, 예외적 자유 (**Positive System**)



외국환거래법(1999. 4월)
원칙적 자유, 예외적 규제 (**Negative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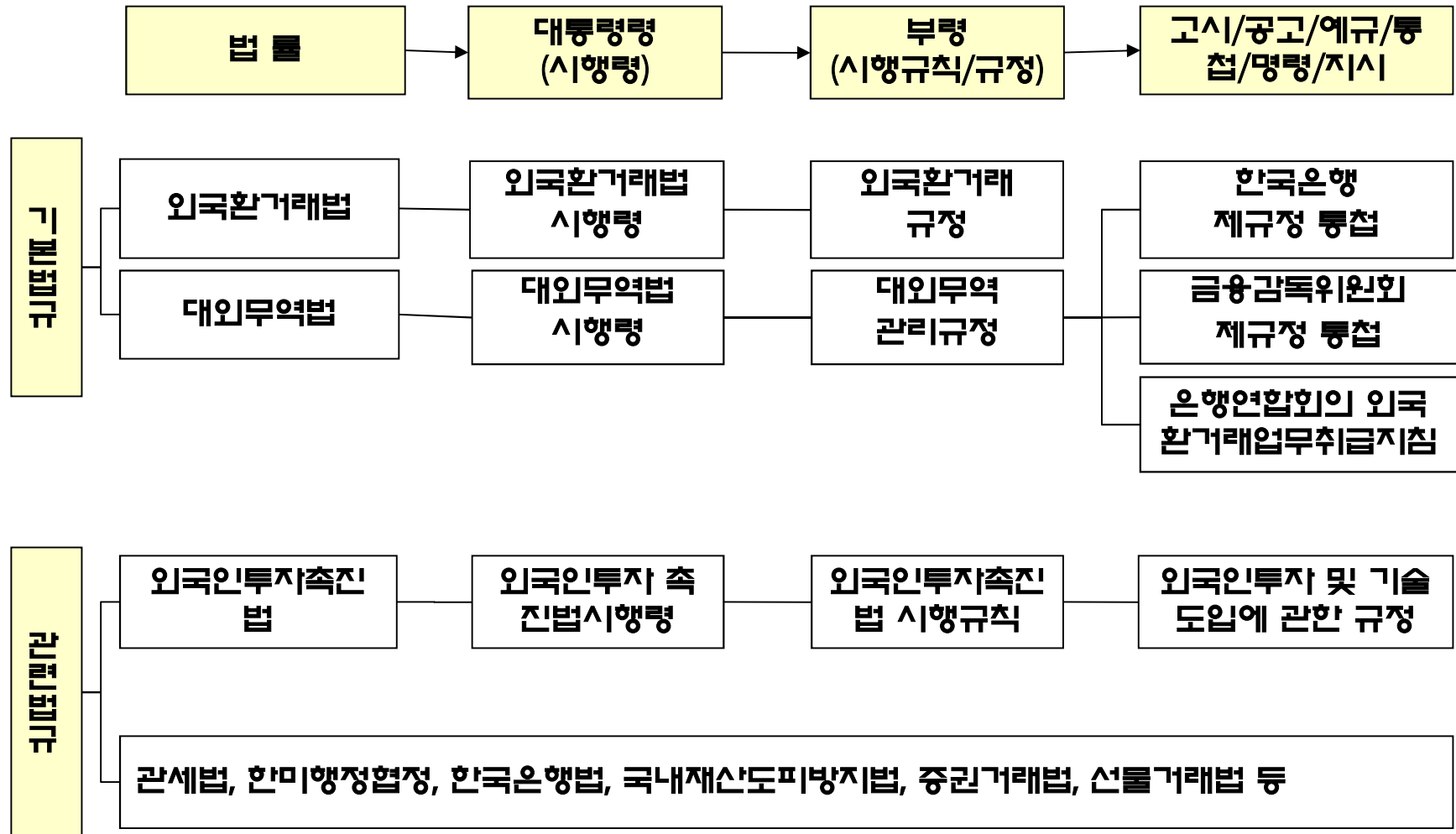
4. 우리나라의 외환제도

외환거래법의 목적



4. 외국환거래법령의 법체계

외국환거래제도 법규체계



4. 외국환거래법령의 법체계

외국환거래법의 구성



외국환거래법

① 총칙

목적 - 국민경제발전
적용대상 - 5가지
정의 - 18가지
환율 - 기준환율 등
거래정지 및 채권의 회수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 : 외국환업무취급기관
환전영업자
외국환중개회사

③ 외국환평형기금 : 설치
조성
운용
상환

④ 지급과 거래 : 지급 등의 허가
지급 등의 방법의 신고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의 허가
자본거래의 신고



1장 총칙

1조 목적



- 대외거래 원활화
- 국제수지 균형
- 통화가치 안정

2조 적용대상



- 대한민국내 외국환 거래
-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거래
- 원화표시 비거주자 거래
- 외국내 거주자 재산 및 업무 행위

4조 거래 원활화 촉진



- 제한 최소화
- 안정적인 외환수급
- 외환시장 안정에 노력

5조 환율



- 기준환율
- 외국환 매도율
- 외국환 매입율
- 재정환율

3조 정의



6조 거래정지



- 지급등 일부/전부 일시정지
- 지급수단/귀금속 보관, 예치, 매각
- 경제사정 급변
 - 고시: 정지대상 지급등/거래범위/정지기간, 보관 등 대상/범위/기간
- 자본거래 허가/예치
 - 고시: 국제수지/국제금융상황 심각, 통화정책/환율정책/거시경제정책 지장, 거래종류, 범위, 기간, 허가절차, 예치대상/비율/금리/기간/기관
- 6월 범위내/ 외국인투자 예외

7조 채권 회수



-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추심/회수
- 시장안정/거래 건전화
- 범위: 건당 5만불 이상
- 기간: 만기/조건성취로부터 1년6개월 이내
- 회수대상 채권
- 회수면제/기간연장

2. 외국환거래법의 목적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한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용어의 정의

1. "내국통화"란 대한민국의 법정통화인 원화(貨)를 말한다.
2. "외국통화"란 내국통화 외의 통화를 말한다.
3. "지급수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정부지폐 · 은행권 · 주화 · 수표 · 우편환 · 신용장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
 - 다. 증표, 플라스틱카드 또는 그 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대외지급수단"이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5. "내국지급수단"이란 대외지급수단 외의 지급수단을 말한다.
6. "귀금속"이란 금, 금합금의 지금(地金), 유통되지 아니하는 금화, 그 밖에 금을 주재료로 하는 제품 및 가공품을 말한다.
7. "증권"이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외화증권"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2. 외국환거래법의 목적

9. "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외환파생상품"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파생상품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11. "채권"이란 모든 종류의 예금·신탁·보증·대차(貸借) 등으로 생기는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2. "외환채권"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13. "외국환"이란 대외지급수단, 외환증권, 외환파생상품 및 외환채권을 말한다.
14.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15.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본다.
16. "외국환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 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推尋) 및 수령
 - 다.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 라.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외국환거래법의 목적

17. "금융회사 등"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관과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8.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 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자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대차계약, 채무보증계약, 대인지급수단·채권 등의 매매계약(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 나. 증권의 발행·모집,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 다. 파생상품거래(거주자 간의 파생상품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 라.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또는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2. 외국환거래법의 목적

- 마. 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국내에 있는 본점,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이하 이 목에서 "사무소"라 한다)와 외국에 있는 사무소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무소의 설치·확장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와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授受)(사무소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나 경상적 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수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형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
20. "비예금성외환부채등"이란 금융회사등의 외국통화표시 부채(외환예수금은 제외한다)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등(제4조)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제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나 그 밖의 대외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정적인 외국환수급(需給)의 기반 조성 및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환율(제5조)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원활하고 질서 있는 외국환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환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외국환의 매도율·매입률 및 재정환율(이하 "기준환율 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3) 외국환거래의 정지 등(제6조)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이 법을 적용받는 지급 또는 수령,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일시 정지
 - 2.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을 한국은행·정부기관·외국환평형기금·금융회사 등에 보관·예치 또는 매각하도록 하는 의무의 부과

(4) 채권의 회수명령(제7조)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국환거래의 건전화를 위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게 할 수 있다.

5. 외국환거래의 적용대상

(1) 인적대상과 거래행위

1) 인적대상

- 인적대상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되며, 구분의 기준은 국적과는 상관없이 일정기간 이상의 거주와 경제활동의 중심지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2) 거래행위

- 대한민국내에서 행하는 외국환거래
-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거래 또는 지급이나 영수(외국에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대한민국 내에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 포함)
-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행하는 대한민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
- 대한민국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그 대리인, 사용자 기타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해 행한 행위
- 대한민국내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자 기타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해 행한 행위

3) 물적대상

- 외국환 : 대외지급수단, 외환증권, 외환채권(債權)
- 내국지급수단 : 대외지급수단을 제외한 내국통화 및 기타의 지급수단
- 귀금속 : 금이나 금합금의 지급, 유통되지 아니하는 금화 기타 금을 주재료로 하는 제품 및 가공품

5. 입국환거래의 적용대상

거주성의 구분

- 인적대상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입국환거래법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 구분기준이 되는 거주성은 국적과는 관계없이 일정기간을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됨

(1) 거주자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 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자연인)
 - ②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및 단체, 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조직체
 - ③ 재입국관 및 이에 근무할 목적으로 파견되어 입국에 체재하고 있는 국민
 - ④ 입국에 있는 영업소·국제기구에 근무하고 있는 국민 또는 2년이상 입국에 체재하고 있는 국민(아래의 2. 비거주자 ③ 내지 ⑥에 해당하는 국민)으로서 일시귀국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 ⑤ 비거주자의 국내지점·출장소·기타 사무소
 - ⑥ 국내에 있는 영업소·기타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 ⑦ 6개월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
 - ⑧ 거주자이었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후 6개월이내에 국내에 6개월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재입국하여 체재하고 있는 자

(2) 비거주자

▪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

- ① 입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외국인(자연인), 입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 및 입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단체, 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조직체
- ② 외국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
- ③ 외국에 있는 영업소·기타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민
- ④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 근무하고 있는 국민
- ⑤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국민
- ⑥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국민
- ⑦ 상기 ③ 내지 ⑥에 해당하는 국민으로서 일시 귀국하여 3개월이 초과되지 않은 자
- ⑧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 ⑨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파견되어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외교관·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 ⑩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 ⑪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에 의한 미합중국군대 등과 그 구성원·군속·초청계약자 및 그 동거가족과 비세출자금기관·군사우편국 및 군

(3) 가족의 거주성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가족은 당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됨

외국환거래 감독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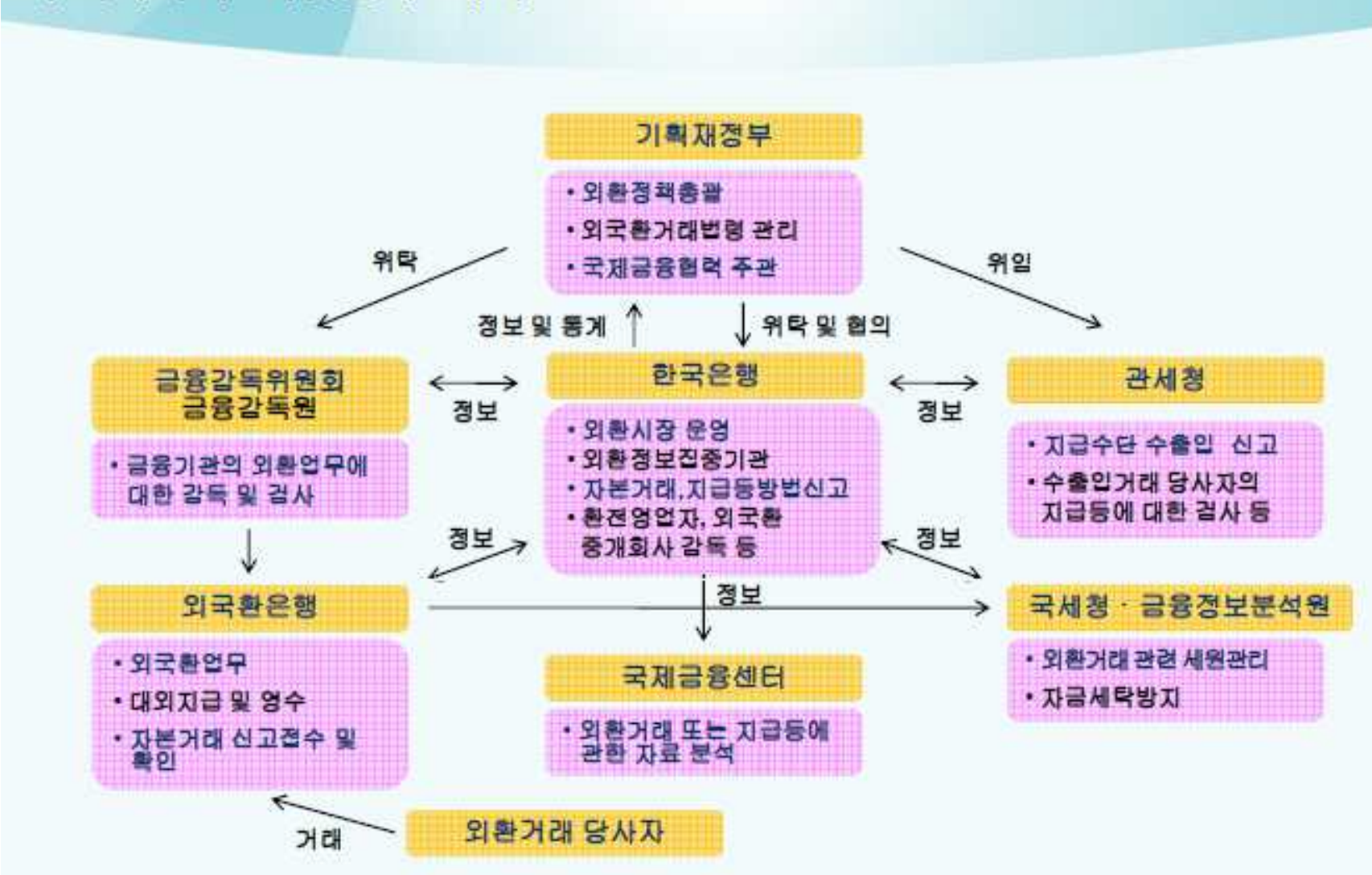
<p>1. 기획재정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정책의 수립과 운용, 최종적 책임 <p>2. 한국은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시장운영, 외화자금 및 외국환의 보유와 운용 ▪ 대외지급 및 자본거래 신고 및 허가 ▪ 환전영업자 등록 및 감독, 외국환중개회사 감독 ▪ 외환정보집중기관 	<p>1. 기획재정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화자금 차입신고(미화 3천만 달러 초과) ▪ 국내외 증권발행 신고 ▪ 30대 계열사 현지법인의 현지금융보증한도 초과 신고 ▪ 금융업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 금융기관의 해외지사 설치신고 수리 등 <p>2. 한국은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회수임무 면제와 기한연장 허가 ▪ 위규거래 지급확인 ▪ 지급수단 수출입허가 ▪ 각종 자본거래의 신고 ▪ 환전영업자 등록 중
--	--

6. 기관별 외국환거래신고

3.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 및 사후관리
4. 외국환평형기금
 - 재경부가 운용관리(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는 한국은행에 위탁)
5. 세관 :
 - 지급수단 등 수출입 신고 및 허가, 개항장내 환전영업자 감독
6. 외국환은행 :
 - 자본거래 신고접수, 지급 및 영수 확인, 사후관리
 - 대외지급 등 외국환업무
 - 상호계산 신고
 - 해외예금신고(미화 5만 달러 이하)
 - 외환자금 차입신고(영리법인 등)
 - 채무보증신고(국내 본점 증권회사 등의 차입 등)
 - 외국부동산, 시설물 등의 이용권, 회원권 취득신고
 - 비거주자의 국내증권 취득신고
 - 개인의 부동산 취득신고
 - 연간 미화 5만 달러 초과 증여성 지급신고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
 - 현지금융신고
 - 해외직접투자신고
 -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사 설치신고 등

6. 기관별 외환거래신고

<우리나라의 외환관리 체계>



6. 기관별 외국환거래신고

30

외국환업무취급기관

1. 재경부장관에게 등록(1999.4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2. 등록요건

- 자본 : 재무구조 적정(금융감독위원회가 확인)
- 시설 : 외환정보집중기관에 전산망연결(한국은행이 확인)
- 인력 : 영업소별 경력 2년 이상의 외환업무종사자 2인 이상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금융 기관으로 제한)

- 외국환은행, 중금사, 체신관서,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보험사업자,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시설대여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용카드업자, 선물업자, 할부금융업자

*** 당해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영위 가능,**

업무로서 하는 행위 및 거래는 신고 또는 허가 필요

환전영업자

- 외국통화의 매입 및 매도(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 매입 포함)만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
 - 매도는 비거주자에 대한 환전실적 범위내에서의 재환전만 가능(거주자에 대한 매도는 불가능)

-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한국은행에 등록하면 영위 가능
 - 시설요건 외의 자본요건 및 인력요건은 불요
 - 개인(외국인 포함)도 등록 가능, 다른 업무와 겸영 가능
 - * 2005년말 현재 약 1,000개

- 검사 및 감독 : 한국은행
 - * 다만 개항장내 환전영업자는 관세청장이 검사 및 감독

외국환중개회사

- 외국환(외화증권 제외)의 매매, 교환, 대여의 중개, 파생금융거래의 중개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자
- 업무영위 인가 : 재경부장관
 - 자본, 시설, 인력 요건 필요
 - 현재 4개사(서울외국환중개(주), 한국자금중개(주), KIDB-ICAP 및 툴릿프리본코리아)
 - 등록제로 변경 예정(외국 중개회사 진출 허용)
- 검사 및 감독 : 한국은행

감사합니다

